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6년 4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례·장사**

**Q**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장례는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장례 절차는 장례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빈소 마련, 입관, 발인, 매장 또는 화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장례주관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사람
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합니다. 다만,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장례의 절차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기준으로 장례를 진행하며, 1일차에는 고인 안치와 빈소 설치를 하고, 2일차에는 염습과 입관을 하며, 3일차에는 발인 후 매장 또는 화장을 하게 됩니다.

장사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의 예식으로는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며, 그 밖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 참조).

※ 장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fcp.or.kr)> 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례·장사

**Q** 선불식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가입할 때 설명 들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계약을 유지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A** 네. 선불식 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발송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선불식 상조서비스

“선불식 상조서비스”란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상조업체에 미리 나

누어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됩니다.

###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 3개월



장례·장사

**Q**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던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카인 제가 사망신고를 해도 될까요?

**A** 네.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므로 고모와 함께 생활하셨다면 조카인 경우에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사망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사망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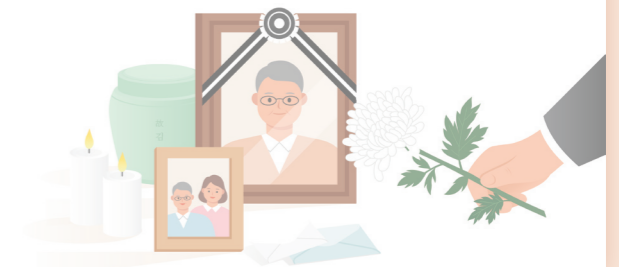
위반 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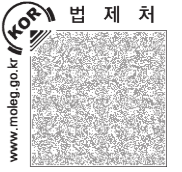
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 장례·장사

**Q** 아버지 장례를 가족끼리 간소하게 치른 뒤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화장은 사망 후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또 화장 후 자연장으로 모시려면 아무 곳이나 가능한지,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안경과 같은 유품을 함께 묻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장은 법령에서 정한 자연장지 등에서만 가능하며, 골분 외의 유품은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 자연장 및 자연장지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자연장지 중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 자연장지의 구분

| 구분     | 내용  |
|--------|---|
| 공설자연장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li> <li>•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유지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li> </ul> |
| 사설자연장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li> </ul>   |

#### 골분을 묻는 방법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골분을 묻을 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 ✔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장례·장사

**Q**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고 공설묘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공설묘지를 미리 매매하거나 사용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설묘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미리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사망 전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공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 ✔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키워드** 장례, 장례주관자, 사망,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장, 상조서비스, 선불식 할부계약, 청약철회권, 사망신고, 사망신고 의무자, 화장, 자연장, 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묘지, 공설묘지, 분묘, 분묘 사전매매, 분묘 설치기간